

(2017년 7월 개정)

미국의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를 위한 수익적 소유자의 외국인 지위 증명서(개인)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용되는 법률 조항은 미연방세법입니다.

향후 변경사항

양식 W-8BEN 및 그 지침(예: 공표 후 제정된 법률)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는 IRS.gov/FormW8BEN에서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사항

양식 W-8BEN을 일부 업데이트하여 양식 W-8BEN-E에 적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I부, II부, 10행 앞에 상호 교환에 대한 메모가 추가되었고, 양식 W-8BEN-E와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명확성을 위해 III부의 첫 번째 항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2017년 1월에 공표된 3장 및 4장에 따른 임시 법령 및 최종 법령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외국인 TIN과 생년월일이 양식 W-8BEN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은 전자 서명의 사용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FATCA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RS.gov/FATCA를 참고하십시오.

일반 지침

이러한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뒤에 나오는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양식의 목적

3장의 목적을 위한 지위 입증. 외국인이 미국 원천으로부터 받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법에 따라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일부 당초발행 할인료(OID) 포함)
- 배당금
- 임대료
- 로열티
- 프리미엄
- 연금
-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또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보상
- 유가증권 대차 거래의 채당금 또는
- 기타 고정 또는 확정적 연간 또는 정기 소득, 이익 또는 수입

이 세금은 지급 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1441조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지불은 그것이 수익적 소유자에게 직접 이루어졌든 수익적 소유자를 위하여 다른 사람(예: 중개인, 대리인 또는 제휴 사업체)에게 이루어졌든 간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446조는 미국에서 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제휴 사업체는 실제적으로 연관된 과세 소득 중 외국인 제휴자의 분배 지분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휴 사업체의 제휴자로서 1441조 또는 1442조의 목적을 위해 양식 W-8BEN을 제출하는 외국인은 1446조에 따른 문서 제출 요건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1441조 및 1442조의 문서 제출 요건이 1446조의 문서 제출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1.1446-1항부터 1.1446-6항까지 참조하십시오.

주의: 제외되는 법인의 소유주(개인을 포함하며, 제외되는 법인 자체는 아님)는 1446조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양식 W-8BEN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을 위하여 양식 W-8BEN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신이 미국인이 아님을 입증
- 자신이 양식 W-8BEN을 제출해야 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거나 1446조의 적용을 받는 제휴 사업체의 외국인 제휴자임을 주장
-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소득세 조약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이며, 조약 특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천징수의 세율 인하나 면제를 요청.

1441조에 따른 세율 30%의 외국인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특정한 종류의 소득과 관련한 국내 정보 보고 및 우선 원천징수(3406조에 따른 우선 원천징수 세율 적용)의 면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양식 W-8BEN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료
- 단기(183일 이하) OID
- 은행 예금 이자
- 외국 원천 이자, 배당금, 임대료 또는 로열티 및
- 블랙잭, 바카라, 크랩, 룰렛, 빅 6 휠 등의 도박에서 비거주 외국인이 건 판돈의 수익이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나 소득 지급인은 적절히 작성된 양식 W-8BEN에 의존하여 양식 W-8BEN과 연관된 지불을 그 지불된 금액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양식 W-8BEN에 의존하여 원천에서 인화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급되거나 입금되기 전에 양식 W-8BEN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십시오. 요청했을 때 양식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3406조에 따라 30%의 외국인 원천징수 세율이나 우선 원천징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장의 목적을 위한 지위 입증. 외국 금융기관(FFI)은 적절히 작성된 양식 W-8BEN에 의존하여 귀하의 4장의 외국인 지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식 W-8BEN은 요청이 있을 때 FFI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비협조 계좌 소유자로 간주되어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귀하에게 지급되거나 입금되는 소득에서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정의를 아래에서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추가 정보 및 지침은

양식 W-8BEN, W-8BEN-E, W-8ECI, W-8EXP 및 W-8IMY 요청자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양식 W-8BEN 제출 대상

귀하가 원천징수의 대상인 금액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귀하 자신이 비거주 외국인임을 문서로 입증하는 FFI의 계좌 소유주일 경우, 귀하는 양식 W-8BEN을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지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외되는 법인의 단일 소유주일 경우, 귀하는 그 제외되는 법인이 받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인 또는 FFI가 요청하면 귀하가 원천징수 세율의 인하나 면제를 요청하든 아니든 양식 W-8BEN을 제출하십시오.

또한 귀하가 해당 피지급인으로서 6050W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지급(지불카드 거래 및 제3자 네트워크 거래)을 받는 외국인이라면 양식 W-8BEN을 요청하는 지급 결제 기관(PSE)에게도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이 미국 내 상업이나 사업 행위와 실제적으로 연관된 소득일 경우, 귀하는 양식 W-8ECI를 PSE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래의 설명에 부합할 경우, 양식 W-8BEN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귀하가 외국인 지위를 문서로 입증하거나 4장의 지위를 문서로 입증하거나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외국 법인일 때. 대신 양식 W-8BEN-E를 사용하십시오.
- 귀하가 미국 국민이거나(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포함) 그 밖의 미국인(거주 외국인 개인 포함)일 때. 대신 양식 W-9를 사용해서 귀하의 미국인 지위를 문서로 입증하십시오.
- 귀하가 외국인 중개인으로 활동할 때(즉, 귀하 자신의 계좌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리인, 수령 명의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위해 활동함). 대신 양식 W-8IMY를 제출하십시오.
- 귀하가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독립적이거나 종속적인 인적 용역의 보상에 대한 원천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일 때. 대신 양식 8233 또는 양식 W-4를 제출하십시오.
- 귀하가 미국 내에서의 상업이나 사업의 수행과 실제적으로 연관된 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그것이 제휴 사업체를 통해 귀하에게 배분되지 않는 경우). 대신 양식 W-8ECI를 제출하십시오. 귀하가 양식 W-8BEN을 제출한 어떤 소득이 실제적으로 연관되게 되면 이것은 상황의 변화이므로 양식 W-8BEN은 그 소득과 관련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양식 W-8ECI를 제출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상황의 변화**를 참고하십시오.

양식 W-8BEN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양식 W-8BEN을 IRS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귀하에게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는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람,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는 사람, 또는 소득을 귀하에게 배분하는 제휴 사업체일 것입니다. 또한 FFI도 귀하의 계좌가 미국 계좌가 아님을 문서로 입증하기 위하여 이 양식을 귀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귀하에게 이루어지거나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배분되기 전에 양식 W-8BEN을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십시오. 귀하가 이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3장 및 4장에 따라) 30%의 세율, 우선 원천징수 세율 또는 1446조에 따라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1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한 종류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특례를 주장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임의로 각각의 다양한 소득과 관련하여 양식 W-8BEN을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양식 W-8BEN을 각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귀하가 1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득이나 계좌를 소유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모든 소유자가 양식 W-8BEN이나 W-8BEN-E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이나 계좌를 지급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나 금융기관이 어느 공동 소유자로부터 양식 W-9를 받으면 그 지급은 미국인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계좌는 미국 계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귀하가 제출한 양식 W-8BEN의 정보가 부정확하게 되면 귀하는 상황의 변화 후 30일 이내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인 또는 귀하가 계좌를 갖고 있는 FFI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양식 W-8BEN이나 기타 적절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8BEN을 사용하여 귀하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미국 내 주소의 변경은 상황의 변화의 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외국에서의 주소 변경이나 다른 외국으로의 변경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귀하가 양식 W-8BEN을 사용하여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경우, 미국으로 또는 귀하가 조약 특례를 주장해 온 국가 이외의 곳으로의 이주는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런 경우, 귀하는 이주 후 30일 이내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인 또는 FFI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양식 W-8BEN의 만료. 일반적으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양식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해지지 않는 한, 양식 W-8BEN은 양식이 서명된 날에 시작해서 이후 3년의 마지막 날에 종료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지위를 입증하는 목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30일에 서명한 양식 W-8BEN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양식 W-8BEN은 상황의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무기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4장의 목적을 위해 양식 W-8BEN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려면 법령 1.1471-3(c)(6)(ii)항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3장의 목적을 위해 양식 W-8BEN의 유효 기간을 결정하려면 법령 1.1441-1(e)(4)(ii)항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양식 W-8BEN을 제출한 후에 미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이 되면 귀하는 더 이상 1441조에 따른 30%의 원천세율이나 1446조에 따른 실제적으로 연관된 소득의 외국인 제후자의 지분에 대한 원천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FFI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 귀하의 계좌는 4장에 따라 FFI의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국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이 된 후 30일 이내에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인 또는 FFI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양식 W-9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 W-9 및 그것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3년 동안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거주일수에 따라 귀하는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IRS.gov/Pub519에 있는 공시 519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시키면 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인 또는 귀하가 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양식 W-9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의

계좌 보유자. 계좌 보유자란 일반적으로 금융 계좌의 보유자나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신원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휴 사업체가 금융 계좌의 보유자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 그 사업체의 제휴자들이 아니라 그 제휴

사업체가 계좌 소유자입니다(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구성원이 1인인 불인정 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그 법인의 단일 소유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3장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금액입니다. 이자(및 OID), 배당금, 임대료, 로열티 및 보상을 포함한 FDAP 소득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시장 할인 및 옵션 프리미엄 포함) 및 법령 1.1441-2항에 기술된 기타 구체적인 소득 항목(예: 은행 예금의 이자 및 단기 OID)은 FDAP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46조의 목적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제휴 사업체의 실질적으로 연관된 과세 소득의 외국인 제휴자 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4장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미국 원천의 FDAP 소득 금액이면서 법령 1.1473-1(a)항에 정의된 원천 과세되는 지급입니다. 3장에 규정된 원천징수의 면제는 원천징수가 4장에 따라 적용되는가를 결정할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 과세되는 지급의 정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외 규정은 법령 1.1473-1(a)(4)항을 참고하십시오(예: 특정한 비금융 지급의 면제).

수익적 소유자. 소득세 조약에 따라 인화된 세율의 원천징수나 그것의 면제가 적용되는 것 이외의 지급에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란 일반적으로 미국 조세 원칙에 따라 그 지급을 세금 신고 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령 명의자, 대리인 또는 보관인으로서 소득을 수령하거나 거래에 도관으로서 참여한 사람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수익적 소유권은 그 지급이 소득인 것처럼 결정됩니다.

외국의 제휴 사업체, 외국의 단순 신탁, 외국의 양도 신탁은 제휴 사업체나 신탁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외국의 제휴 사업체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그 제휴 사업체의 제휴자들입니다. 단, 제휴자는 그 자신이 제휴 사업체, 외국의 단순 또는 양도 신탁, 수령 명의자 또는 그 밖의 대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외국의 제휴 사업체, 외국의 단순 또는 양도 신탁, 수령 명의자 또는 그 밖의 대리인이 아닐 경우, 외국의 단순 신탁(즉, 651(a)항에 기술된 외국 신탁)에 지급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그 신탁의 수혜자들입니다. 외국 양도 신탁의 수익적 소유자(즉, 신탁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671 조부터 679조까지에 따라 양도자나 다른 사람의 소유로 간주되는 외국 신탁)란 신탁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복합 신탁(즉, 외국 단순 신탁이나 양도 신탁이 아닌 외국 신탁)으로 지급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신탁 자체입니다.

1446조의 목적상, 동일한 수익적 소유자 규칙이 적용되지만 1446조 하에서 수혜자가 아닌 외국의 단순 신탁이 이 양식을 제휴 사업체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국의 부동산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부동산 자체입니다.

주의: 미국의 제휴 사업체, 미국의 신탁 또는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지급은 미국 피지급인에 대한 지급으로 간주되며, 3장이나 4장에 따른 30%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제휴 사업체, 신탁 또는 부동산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식 W-9를 제출해야 합니다.

1446조의 목적상, 미국의 양도 신탁이나 불인정 법인은 그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식 W-9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양도자나 기타 소유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적절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장. 3장은 미연방세법의 3장(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을 의미합니다. 3장은 1441 조부터 1464조까지입니다.

4장. 4장은 미연방세법의 4장(특정 외국인 계좌에 대한 신고를 집행하기 위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4장은 1471 조부터 1474조까지입니다.

이행 간주 FFI. 1471(b)(2)항에 따라 일부 FFI는 IRS와 FFI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4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행 간주 FFI는 IRS에 등록하고 국제 중개기관 고유번호(GIIN)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 FFI를 **등록형 이행 간주 FFI**라고 합니다. 법령 1.1471-5(f)항을 참조하십시오.

불인정 법인. 소유주가 1인이며, 법령 301.7701-2(b)항의 기업이 아닌 사업체는 그의 소유주와 별도로 법인으로 불인정됩니다. 불인정 법인은 1446조의 목적을 위해 제휴 사업체로 또는 4장의 목적을 위해 FFI로 이 양식 W-8BEN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법인의 소유주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법령 1.1446-1 및 1.1471-3(a)(3)(v)항을 각각 참고하십시오.

미국 조세 목적상 불인정되는 일부 법인이 관련 조세 조약에 따른 조약 특례를 주장할 목적을 위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아래의 혼성체 정의 참고).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혼성체는 양식 W-8BEN-E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W-8BEN-E 및 그것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금융 계좌. 금융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금융기관이 유지하는 예탁 계좌
- 금융기관이 유지하는 보관 계좌
- 투자 법인 및 일부 지주회사, 자금 관리 센터 또는 법령 1.1471-5(e)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금융기관들의 주식 또는 채무 이자(정규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이자 외)
- 저축성 보험 계약
- 연금 계약.

4장의 목적상, 일부 세금 우대 저축계좌, 기간성 생명보험, 부동산이 보유한 계좌, 에스스로 계좌, 연금 계약 같은 계좌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예외에는 특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령 1.1471-5(b)(2)항을 참조하십시오. 계좌들은 또한 관련 IGA의 금융 계좌의 정의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이란 일반적으로 예금기관, 보관기관, 투자법인 또는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 계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또는 보험회사의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외국 금융기관(FFI). FFI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인 외국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외국인에는 미국인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 개인 및 일부 외국 법인이 포함됩니다(법인은 양식 W-8BEN이 아니라 양식 W-8BEN-E를 작성해야 함).

혼성체. 혼성체란 세법에 따른 그 지위 목적상 세무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이 소득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세무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개인이 아님). 혼성체의 지위는 조약 특례의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간 합의(IGA). IGA란 모델 1 IGA 또는 모델 2 IGA를 의미합니다. 모델 1 또는 모델 2 IGA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는 법역의 목록에 대해서는 www.treasury.gov/resource-center/tax-policy/treaties/Pages/FATCA-Archive.aspx를 참조하십시오.

모델 1 IGA란 미국 또는 재무부와 외국 정부 또는 하나 이상의 기관들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FFI가 그런 외국 정부나 그의 기관들에게 보고하고, 보고된 정보를 IRS와 자동 교환함으로써 FATCA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역의 정부에게 계좌 보고를 수행하는 모델 1 IGA 법역의 FFI를 **보고형 모델 1 FFI**라고 합니다.

모델 2 IGA란 미국 또는 재무부와 외국 정부 또는 하나 이상의 기관들 간의 합의 또는 협정을 의미하며, FFI가 FFI 계약 요건에 따라 IRS로 직접 보고하고, 해당 외국 정부나 그의 기관과 IRS 간의 정보 교환으로 보완함으로써 FATCA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부와 관련하여 FFI 계약을 체결한 모델 2 IGA 법역의 FFI는 참여 FFI이지만 **보고형 모델 2 FFI**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 외국인이 아닌 개인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입니다. "녹색카드 테스트"나 "실질적 체류 테스트"를 충족하는 외국인 개인은 거주 외국인입니다. 어느 테스트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입니다. 또한, 개인의 미국 조세 책임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법령 301.7701(b)-7항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개인, 또는 푸에르토리코, 광,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또는 미국령 사모아의 선의의 거주자인 외국인 개인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입니다.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 지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 519를 참조하십시오.



미국인이거나 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예: 공동 소득세 신고서 제출)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개인도 임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한 3장의 원천세 목적상 여전히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4장의 목적상, 미국인과 공동 계좌를 갖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은 4장의 목적상 미국 계좌 보유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참여 FFI. 참여 FFI는 보고형 모델 1 FFI인 지부 또는 미국 지부 이외의 모든 지부 FFI에 관련하여 FFI 합의의 조건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 FFI입니다. 기간 "참여 FFI"에는 보고형 모델 2 FFI와 미국 금융기관의 유자격 중개인(QI) 지부도 포함됩니다(그런 지부가 보고형 모델 1 FFI가 아닐 경우).

참여 피지급인. 참여 피지급인은 지불카드를 지급으로 받거나 제3자 네트워크 거래의 결제에서 제3자 결제 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 결제 기관(PSE). PSE는 전자 상거래 기관 또는 제3자 결제 기관입니다. 6050W조 하에서 PSE는 일반적으로 지불카드 거래나 제3자 네트워크 거래의 결제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PSE는 관련 양식 W-8을 통해 외국인으로 문서 입증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이루어진 결제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협조 계좌 보유자. 비협조 계좌 소유자란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양식 W-8BEN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의 계좌의 미국 또는 외국인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FFI가 문서 제출 및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미국인. 미국인은 7701(a) (30)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미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인 개인이 포함됩니다. 4장의 목적상, 미국 국민은 법령 1.1471-1(b) (14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3장 또는 4장 원천징수의 대상인 미국 원천의 FDAP 소득의 통제, 수령, 보관, 처분 또는 지급을 행하는 미국인이거나 외국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외국 중개인, 외국 제휴 사업체 그리고 일부 외국 은행 및 보험회사의 미국 지부를 포함한(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음) 개인, 기업, 제휴 사업체, 신탁, 협회 또는 기타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1446조의 목적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미국에서 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제휴 사업체입니다. 공개 거래되는 제휴 사업체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휴 사업체, 외국인을 대리하여 이자를 받는 수령 명의자 또는 그 둘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 1.1446-1항부터 1.1446-6항까지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지침

1부

1행.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귀하가 지급과 관련하여 혼성체로서의 조약 특례를 주장하지 않는 불인정 법인의 단독 소유주이며 외국인 개인이라면 귀하의 이름과 정보를 사용하여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입금되는 계좌가 불인정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는 그 사실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불인정 법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양식의 7행(참조 번호)에 기입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인정 법인이 혼성체로서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경우, 그 법인은 이 양식 W-8BEN 대신 양식 W-8BEN-E를 작성해야 합니다.

2행. 귀하의 국적을 기입하십시오. 귀하가 이중 국적자라면 이 양식을 작성하는 시점에 귀하가 국민이며 거주자인 국가를 기입하십시오. 귀하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가장 최근에 거주자였던 국가를 기입하십시오. 그러나 귀하가 미국 국민이라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양식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양식 W-9를 제출하십시오.

3행. 귀하의 영구적 거주 주소는 해당 국가의 소득세 목적상 귀하가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국가의 주소입니다. 귀하가 소득세 조약에 따라 인화된 세율의 원천세를 주장하기 위하여 양식 W-8BEN을 작성한다면 귀하는 그 조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귀하의 거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주소, 우편사서함 또는 우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소를 표기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어떤 국가에도 세법상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귀하의 영구적 거주지는 귀하가 보통 거주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거리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3행에 서술적 주소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는 귀하의 법역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귀하의 영구적 거주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4행. 우편 주소는 귀하가 3행에 표기한 주소와 다를 경우에만 기입하십시오.

5행.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여기에 기입하십시오. SSN을 신청하려면 양식 SS-5를 사회보장국(SSA)이나 온라인 www.ssa.gov/forms/ss-5.pdf에서 받으십시오. 귀하가 미국에 있다면 SSA는 1-800-772-121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양식 SS-5를 작성하여 SSA로 보내십시오.

귀하가 SSN이 없으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개인 납세자 번호(ITIN)를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을 신청하려면 양식 W-7을 IRS로 제출하십시오. ITIN을 받는

데는 보통 4-6주가 소요됩니다. 조약 특례를 주장하려면 SSN이나 ITIN을 5행에 기입하거나 외국인 납세자 번호(외국인 TIN)를 6행에 기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ITIN은 조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것은 귀하에게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미국 법을 하에서 귀하의 고용 또는 이민 관련 지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제휴 사업체의 제휴자는 실제로 연관된 과세 소득을 배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휴자는 미국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납세자 번호(TIN)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우, SSN 또는 TIN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한 제도 하에서 받는 특정한 연금에 대하여 871(f)항에 따라 원천세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 미국에서 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제휴 사업체에게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가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세법상 거주지의 법역이 귀하에게 발급한 납세자 번호를 6행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I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관련하여 조약 특례를 주장할 때는 ITI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식 및 부채 증권의 배당금 및 이자
-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유추얼 펀드)가 발행한 상환 증권의 배당금
-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또는 발생 당시) 공모되고 SEC에 등록된 단위 투자 신탁의 수익적 지분 단위들로부터의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
- 위의 어떤 증권들의 대여와 관련된 소득

6행. 귀하가 금융기관의 미국 지부(FFI 미국 지부 포함)를 소유하고 있고 이 양식과 관련된 양식 1042-S으로 보고할 수 있는 미국 원천 소득을 받고 있는 금융 계좌(법령 1.1471-5(b)항에 정의됨)와 관련하여 귀하 자신을 계좌 소유자로서 문서로 입증하기 위해 이 양식 W-8BEN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3행에 확인된 세법상 거주지의 법역이 귀하에게 발급한 TIN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TIN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법역이 TIN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포함), 또는
- 미국 소유지 거주자인 경우

귀하가 위에 설명된 금융 계좌를 문서로 입증하기 위해 이 양식을 제공하지만 6행에 TIN을 입력하지 않았고 미국 소유지 거주자가 아닌 경우, 귀하의 TIN이 발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목적상, 설명은 귀하의 세법상 거주지의 법역에서 TIN을 획득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진술입니다. 이 설명은 6행, 양식의 여백 또는 양식과 관련하여 첨부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6행에 설명을 작성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없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하지 마십시오.

또한, 귀하가 위에 설명된 금융 계좌를 문서로 입증하기 위해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약 특례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상 귀하의 세법상 거주지의 법역이 귀하에게 발급한 TIN을 6행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5행에 미국 TIN을 제공하는 대신).

7행. 이 행은 양식 W-8BEN을 제출하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양식을 제출 받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수행할 때 유용한 참고

정보를 기입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양식 W-8BEN과 특별 양식 W-8IMY를 관련시켜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참조 번호나 코드를 위해 7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7행에 자신이 이 양식을 제출하는 원인인 계좌의 번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법인의 외국인 단독 소유주는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입금되는 계좌가 불인정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알려 줄 때 7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행을 위한 지침 참조).

8행. 귀하가 금융기관의 미국 지부(FFI 미국 지부 포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위 6행에 설명한 것처럼 금융 계좌와 관련된 계좌 소유자로 귀하 자신을 문서로 입증하기 위해 이 양식 W-8BEN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생년월일을 제공하십시오. 귀하의 정보를 입력할 때 월-일-년(MM-DD-YYYY)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1956년 4월 15일에 태어났다면 04-15-1956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II부

9행. 귀하가 3장 하에서 원천 과세의 대상인 지급에 대하여 미국이 소득세 조약을 체결한 외국의 거주자로서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소득세 조약 목적상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국가를 기입하십시오. 조약의 목적상, 어떤 한 사람이 조약의 조건 하에서 그 국가의 거주자라면 그 사람은 조약 가맹국의 거주자입니다. 미국 조세 조약의 목록은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ax-Treaties에 있습니다.



귀하가 267(b)항이나 707(b)항의 의미 내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와 관련이 있으며, 그 해에 받는 원천과세 대상인 금액의 총액이 \$500,000를 초과하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IRS.gov/Form8833에 있는 양식 8833, 6114조 또는 7701(b)항에 따른 조약 기반의 신고 지위 공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 Form 8833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10행. 10행은 귀하가 9행과 3부에서 행하는 진술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조건들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조약 특례를 귀하가 주장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약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에 대한 다양한 원천세율이 포함되어 있다면 로열티에 대하여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외국의 학생 및 연구자는 이 행을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장학금 및 연구 보조비를 참고하십시오.

이 행은 일반적으로 조약의 이자 또는 (소유권에 기반한 우선 세율의 대상인 배당금 이외의) 배당금 조항에 따른 조약 특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거주 외국인이 되는 비거주 외국인.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 개인만 조세 조약의 조건들을 사용하여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한 미국의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 조약에는 조세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각국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 또는 "보호"하는 "유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보 조항에 명시된 예외 규정은 수혜자가 조세 목적상 미국 거주 외국인이 된 후라도 특정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 면제를 계속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양식 W-9를 사용하여 조세 조약 특례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식 W-9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아래에 있는 거주 외국인이 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자를 참고하십시오.

장학금 및 연구 보조비. 비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 포함)이나 연구자는 양식 **W-8BEN**을 사용하여 그런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 받는 데 적용되는 조세 조약에 따른 특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약 특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양식 **W-8BE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자는 양식 **W-8BEN** 대신 양식 **8233**을 사용하여 그런 소득에 적용되는 조세 조약의 특례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소득에 대하여 조세 조약의 원천세 면제를 주장하지 않는 학생이나 연구자는 양식 **W-4**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에 양식 **W-8BEN**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양식 **8233**을 위한 지침에 있는 종속적 인적 용역의 보상을 참고하십시오.

팁 귀하가 동일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비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과 인적 용역 소득(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 포함)을 받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라면 양식 **8233**을 사용하여 2가지 종류의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조세 조약의 원천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행 및 9행의 작성.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대부분의 조세 조약들은 수혜자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나 직전에 상대 조약 국가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연구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더 이상 상대 조약 국가에 영구적인 주소가 없더라도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귀하는 미국 주소를 3행에 기입할 수 있으며, 조세 조약에서 요구하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전히 면제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9행에 귀하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또는 직전에 거주자였던 조세 조약 국가를 기입해야 합니다.

10행의 작성. 귀하가 조세 조약 하에서 비보상적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비 소득에 대한 과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라면 10행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이 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자. 귀하는 양식 **W-9**를 사용하여 유보 조항의 예외를 주장해야 합니다. 유보 조항 및 그것의 예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앞서 나온 거주 외국인이 되는 비거주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예. 미국-중국 소득세 조약의 20조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중국 학생이 받는 장학금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허용합니다. 미국 법률 하에서 그 학생은 미국 내 체류가 5년을 초과하면 조세 목적상 거주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중국 조약의 첫 번째 의정서(1984년 4월 30일자)의 2번째 단락은 중국 학생이 미국의 거주 외국인이 된 후에도 20조의 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런 예외(첫 번째 의정서의 단락 2에 따른)에 대한 자격이 있으며, 이 예외에 근거하여 자신의 장학금이나 연구비 소득에 대한 과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중국 학생은 양식 **W-9**를 작성해야 합니다.

III부

양식 **W-8BEN**은 원천 과세의 대상인 금액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FFI의 계좌 소유자(또는 그 사람을 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 **W-8BEN**을 수익적 소유자나 계좌 소유자의 적절한 위임장을 받아 활동하는 대리인이 작성할 경우, 그 양식을 작성, 서명 및 제출할 때 대리인이 위임자 본인의 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적절한 형식의 위임장이나 그것의 사본을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목적에 의해 양식 **2848**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및 수익적 소유자나 계좌 소유자는 조작, 허위 또는 사기적인 양식에 대하여 규정된 처벌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양식에 전자 서명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그렇게 하도록 승인된 사람에게 의해 해당 양식이 전자적으로 서명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간 및 날짜 스탬프와 해당 양식이 전자적으로 서명되었다는 진술 포함). 단순히 서명란에 이름을 입력하는 것은 전자 서명이 아닙니다.



양식 **W-8BEN**에 기입된 정보가 부정확하게 되었을 경우, 귀하가 여전히 요청자인 FFI의 계좌 소유자이며, 그 계좌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급을 받을 예정인 한 30일 이내에 새로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인 거래 또는 물물교환. 중개인 거래나 물물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귀하가 면제 받는 외국인임을 양식 **W-8BEN**이나 대체 양식을 제출하여 중개인이나 물물교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신고 및 우선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다음의 경우, 귀하는 1년간 면제 받는 외국인입니다.

- 귀하가 비거주 외국인 개인이거나 외국 기업, 제휴 사업체, 부동산 또는 신탁일 때;
- 귀하가 그 해에 총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으며, 그럴 계획이 없는 개인일 때;
- 귀하가 그 해에 중개인이 있는 거래나 물물교환으로부터 실제로 연관된 이익을 얻는 미국 내 상업 또는 사업에 고용되지 않았으며, 고용될 계획도 없는 경우.

문서 감축 법안 고지. 저희는 미국의 국내 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양식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귀하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이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 및 징수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유효한 OMB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귀하는 문서 감축 법안이 적용되는 양식에서 요청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양식이나 그것에 대한 지침과 관련된 장부나 기록은 그것의 내용이 국내 세법의 집행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 한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및 신고 정보는 6103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비밀로 보호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기업 납세자가 이 양식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예정 부담 시간은 OMB 관리 번호 1545-0123에 따라 승인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다른 모든 납세자의 예정 부담 시간: 기록 관리, 2시간, 52분. 법 또는 양식에 대해 알아보기, 2시간, 5분. 양식 준비, 2시간, 13분.

이와 같은 예상 시간의 정확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양식을 보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IRS.gov/FormComments](https://www.irs.gov/FormComments)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Forms and Publications, 1111 Constitution Ave. NW, IR-6526, Washington, DC 20224로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양식 **W-8BEN**을 이 사무실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귀하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보내십시오.